

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464
----------	-----

2023년 2월 24일  
환경수자원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3년 2월 3일, 김경훈 의원 외 29명  
나. 회부일자 : 2023년 2월 9일  
다. 상정일자 : 제3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 
(2023년 2월 24일 상정, 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 설명자: 김경훈 의원]

### 가. 제안이유

- 도시숲의 거시적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숲등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골자

- 1)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(안 제14조)
- 2) 자구수정(안 제6조 및 제29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[수석전문위원 : 피재황]

### 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의 거시적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도시숲등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구성범위를 확대하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-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숲등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함)는 동 조례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<sup>1)</sup>의 조성·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,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사항, 도시숲등 조성·관리 사업 등 산림 및 수목에 대해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위임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음.
- 위원회는 동 조례 제14조(위원회의 구성)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, 같은 조 제3항에 위원은 ①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관련 전문가, ② 관할지역의 주민대표, ③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각각 2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.

#### 〈서울특별시 도시숲등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구성현황〉

계	내부위원 (당연직)	외부위원(위촉직)		
		① 도시숲등 전문가	② 주민 대표	③ 시민단체 추천
11	2	5	2	2

※ 내부위원: 푸른도시여가국장, 자연생태과장

※ 위원임기: 외부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

1) 도시숲·생활숲의 산림 및 수목, 가로수

- 그러나 위촉 위원 대상이 도시숲등 전문가, 주민대표,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심의안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.
- 상위법인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3항<sup>2)</sup>에는 위촉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,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.
- 따라서 안 제14조와 같이 상위법에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원 위촉 대상 외에 심의안건의 내용에 따라 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’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다양성의 확보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---

2)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

① ~ ② (생략)

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2.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
3.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
④ (생략)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10호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각 호”를 “제1호부터 제3호까지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2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도시숲등 조성·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조성·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10. 그 밖에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이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6조(도시숲등 조성·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----- <u>시장</u>----- ----- -----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4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,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. 다만, <u>각 호에</u>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4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제1호부터 제3호까지</u>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u></p>
<p>제29조(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·운영 등) ① (생략)</p>	<p>제29조(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·운영 등) (현행 제1항과 같음)</p>